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

(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1. 석유판매업

구분	석유판매업의 종류	취급 석유제품
등록 대상	일반대리점	○석유제품(용제·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는 제외한다)
	용제대리점	○용제
	주유소	○휘발유·등유·경유
	용제판매소	○용제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부산물인 석유제품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생연료유
신고 대상	일반판매소	○등유·경유
	항공유판매업	○항공유
	특수판매소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석유제품

※비고: 윤활유 또는 아스팔트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 판매업에서 제외한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구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취급 석유대체연료
등록 대상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유·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